

항목	'24년(기존)	'25년(변경)
사업비	<p><농촌돌봄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55백만원(신규 20백만원) <p><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80백만원 <p><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66백만원(신규 50백만원) <p><거점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155백만원 	<p><농촌돌봄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55백만원(신규 25백만원) <p><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79백만원 <p><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69백만원(신규 50백만원) <p><거점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소당 150백만원
조직 형태	<p><농촌돌봄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민간 단체 등 ○ 신설 	<p><농촌돌봄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단체 등 * 신규 사업자는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 ○ <u>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함</u>
사업 대상자	<p><거점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을 위해 권역별 선정된 조직 	<p><거점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농장 및 공동체 발굴, 사업 설명회, 운영 컨설팅,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을 위해 권역별 선정된 조직
우대 요건	<p><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이 조직 대표이거나, 조직구성원 중 70% 이상이 여성일 경우 가점 부여 ○ 신설 	<p><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조직 대표 3점, 조직구성원 중 50% 이상 여성일 경우 5점,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5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둘 이상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부여 ○ 지역활력타운(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이 신규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우선 선발
	<p><거점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사회적 경제 포함) 관련 전문 교육기관, 복지시설, 지역문화센터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p><거점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항목	'24년(기준)	'25년(변경)
지원 내용	<p><농촌돌봄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전체 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2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을 위한 소모임, 세미나, 워크샵, 선진지 견학에 따른 장소 임차료, 다과비용, 교통비 ○ 기획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상품기획 및 마케팅 비용, <u>사회적 농업 우수사례 학습·견학 비용</u> 등 	<p><농촌돌봄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농업을 위한 소모임, 세미나, 워크샵, <u>현장 견학</u>, 다과비용, 교통비 등 제반 비용 ※ 네트워크 구축비는 전체 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20% 이내 ○ 기획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기획·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상품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p><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활동비 	<p><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료 집행 가능) 및 활동비
	<p><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공동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서비스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농업 활동의 경우 강사비는 농촌 돌봄농장 강사비 기준 준용 - <u>제공되는 서비스 연계 기관 위탁 시, 서비스 제공비는 위탁비로 처리</u> <p>* 활동비는 시설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집행</p>	<p><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공동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서비스 활동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비는 <u>사회적농업 활동에 한해서만 집행 가능하며, 농촌돌봄농장 강사비 기준 준용</u> - <u>농촌주민생활돌봄 활동 여비는 조직 구성원 및 돌봄공동체 참여·연계 기관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을 준용하여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지급</u>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4시간 이상 활동은 2만원/일, 4시간 미만 활동은 1만원/일 집행 ②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u>교통비, 식비(9천원 이내) 실비 지급</u> * 여비 산출방식 : $\text{교통비}(\text{활동거리(km)} \times \text{리터당 유류비} \div \text{자동차 연비}) + \text{식비}$ - <u>조직 구성원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해당 분야 전문 사업자(사업자등록 업체)에 서비스를 의뢰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의뢰비'로 처리</u> * <u>서비스 의뢰 계약서(또는 견적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사 서비스 소요 비용과 비교하여 적정한 비용으로 계약</u>

항목	'24년(기준)	'25년(변경)
	<p>○ <u>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운영비 등 기타 비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정기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우수사례 현장 방문, 홍보, 마케팅 등 운영 비용 전반 * 네트워크 구축비는 전체 사업비(인건비, 시설 개선비 제외) 20% 이내 집행 - <u>재료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u> · <u>마을 경관 조성 등 공공의 목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 사용 물품 구입 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u> <p>○ <u>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및 활동비</u></p>	<p>※ 서비스 활동비는 시설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집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재료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u> · <u>마을 경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 사용 물품 구입 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u> <p>○ <u>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체 정기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현장 방문, 홍보, 마케팅 등 운영 비용 전반 * 네트워크 구축비는 전체 사업비(인건비, 시설 개선비 제외) 20% 이내 집행 <p>○ <u>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료 집행 가능) 및 활동비</u></p>
	<p><거점농장></p> <p>○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교육비, 자문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출장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다과, 식대 포함), 인건비(4대 보험 가입 필수) 등 <p>○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기존 시설 개보수, 기자재(집기) 구입 비용 등</u> 	<p><거점농장></p> <p>○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u>신규 농장 및 공동체 발굴, 사업 설명회, 운영 컨설팅</u>, 자문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출장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다과, 식대), 인건비(4대 보험료 집행 가능) 등 <p>○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거점농장 활동을 위한 시설 개보수, 기자재(집기) 구입 비용 등</u>

2025년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

2024. 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	과 장 김 상 현	044-201-1571
		사무관 김 화 태	044-201-1572
농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자원개발원)		부 장 양 희 경	031-8084-9561
		차 장 이 혜 경	031-8084-9564

I.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치유·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 지역 내 다수의 주민, 기관 및 단체 등이 모여 해당 지역에 부족한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주민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2. 근거법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의4 (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9조 (농촌 서비스 지역 공동체의 지정) 및 제14조(사회적 농장에 대한 지원)

3. 사업 규모 및 내용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안)
○ 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농특회계)	9,260	9,100	9,770
- 국 고	6,752	6,634	7,133
· 농촌돌봄농장·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70%)	4,872	4,872	5,313
· 거점농장(70%)	980	882	840
· 농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100%)	900	880	980
- 지방비	2,508	2,466	2,637
· 농촌돌봄농장·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30%)	2,088	2,088	2,277
· 거점농장(30%)	420	378	360

- 사업 내용

- (농촌돌봄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실천하는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등 지원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공동체 활동 운영비, 중간지원 인력의 활동비, 서비스 제공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신규 농장 및 공동체 발굴, 사업 설명회, 운영 컨설팅,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II.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농촌'의 정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5호에 따르며, 농장의 위치가 농촌에 소재해야 함

① 사회적 농업 : 농업인을 중심으로,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 활동 등을 통한 돌봄·치유·교육·고용 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및 실천

※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적 농업 해당 여부는 시·도에서 판단하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농업 활동을 통해(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출하·유통·가공하는 활동을 포함) 돌봄·치유·교육·고용 등의 효과를 도모하는 경제활동일 것

* 농업 활동과 연계하여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활동의 경우 예산지원 가능

< 사회적 농업 유형 예시 >

- ▶ (돌봄) ○○법인은 복지관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들과 함께 발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장애인들은 농장 활동 과정에서 비장애인들(농장·인근 농장 사람들 등)과 어울리며 사회성을 높이고 농작업을 통해 운동효과를 내고 있으며 약 복용을 줄일 정도로 건강을 회복함. ○○법인은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농업활동을 익힘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마을에 정착하여 어울려 살 수 있기를 희망함

- ▶ (치유) ◇◇법인은 정원형 텃밭을 조성하여 장애인, 어린이, 노인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농업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농장은 인근 소외계층 아이들의 쉼터이자 주변 노인들의 작업장이기도 함

* 다만, 농촌관광, 단순 체험행사는 해당하지 않음

- ▶ (교육) △△법인은 과수작물을 재배하면서 농업기반이 없는 청년들의 창농 및 농촌정착을 목표로 농업기술·유통·판매 등을 교육하고 있으며, 청년 창농 정보 플랫폼 구축과 청년 대상 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인근농가 및 지역협동조합과 연계하여 농업회사의 경영교육 및 판매실습을 통해 청년들의 귀농·창농·농촌정착을 지원하고 있음

- ▶ (고용) □□법인은 다양한 발작물을 재배하면서 장애인복지관 등과 협력하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작업 등의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을 대상으로 농업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직업훈련을 거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으로 △△법인과 지역의 농업관련 법인으로의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1)의 활동을 사회적 약자 등과 함께 할 것

* 사회적 약자 등: 장애인, 고령자, 아동, 약물중독자, 미혼모, 범죄피해 가족, 다문화 가족, 저소득층 등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 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람

(3) 사회적 농업 활동을 실천하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이 있을 것

(4) 이러한 활동을 하면서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등과 네트워크를 이루어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

* 다만, 심사일 기준 현재 (4)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지 못하였더라도 사업계획서상 협력관계 구축 계획을 심사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네트워크 구축 예시 >

- ▶ (네트워크 구축 대상)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및 타 사회적 농업 조직 등
 - 보건소·병의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장애아동 소속 학교, 노인 및 장애인 소속 복지·요양시설, 특수교육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사회적 농업 관련 분야(보건·복지·교육 등) 종사자 및 전문가 등
 - 판로 개척을 위한 판매장(농협, 수협, 생협, 소비자단체 등)
 - 타 사회적 농업 조직, 지역 주민, 외지인 등
- ▶ (네트워크 구축 내용) 사회적 농업 활동에 다양한 지역주민·외부전문가의 참여, 사회적 농업 생산품 판매 협력 등
 - 지역사회 주민, 조직, 단체 등 협력 주체들이 사회적 농업 활동의 기획, 실행, 평가 등에 참여

- 사회적 농업이나 지역사회의 복지, 교육, 농업, 일자리 등에 관한 학습과 토론 활동 기획 및 실행
- 사회적 농업 생산품을 지역생협, 꾸러미사업 등을 통해 판매

② 조직 형태 : 법인 또는 단체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농어업경영체법),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민법 상 법인·조합, 상법 상 회사, 마을기업, 비영리 단체 등
 - * 신규 사업자는 농업경영체이거나 농업경영체를 구성원으로 포함
- 법인 또는 단체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추진한 실적이 있어야 함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구성된 농업협동조합은 사업 대상에서 제외
- 여러 기관·단체가 협의체(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협의체 또는 협의체 내 대표기관의 조직 형태가 법인이어야 함
- 농업법인의 경우 설립요건, 총출자금 요건 등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6: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따라야 함

③ 조직 구성 :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 및 지역 외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사업지 소재 읍·면·동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1명 이상 또는 농업법인을 포함할 것

○ 우대요건 : 가점 부여(최대 5점) 및 우선선발

- 여성 조직 대표 3점, 조직구성원 중 50% 이상 여성일 경우 5점,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5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둘 이상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부여
- 지역활력타운(국토부) 사업으로 선정된 농촌돌봄농장이 신규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우선 선발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

○ 사업대상자 :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협력하는 공동체(계속 사업자만 선정)

- ①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 (1) 구성 농장들은 가급적 서로 인접한 곳에 위치해야 함(리 또는 읍·면)
 - (2) 개별 농장들은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각각 갖추어야 함
 - (3) 구성 농장들은 지역 주민의 필요 충족,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등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여 활동을 위해 협력하여야 함

② **조직 형태·구성** : 중간지원 기관과 다수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하거나 농촌 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 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1) 중간지원 기관(대표)과 최소 3개 이상의 농촌돌봄농장이 결합

* 중간지원 기관 : 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여성농업인센터 등 농촌 활성화와 관계된 여러 분야에서 농업인 및 주민의 실천을 돕도록 시·군 수준에서 설립·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이며, ② 지역 주민의 수요 파악, 사회복지시설, 교육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농촌돌봄농장 간의 협력 지원, 지역사회 기여방안 기획 등의 역할을 담당함

(2) 대표농장을 포함하여 최소 3개 이상 농촌돌봄농장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

○ **우대요건** : 가점 부여(최대 5점)

- 여성 조직 대표 3점, 조직구성원 중 50% 이상 여성일 경우 5점,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5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둘 이상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부여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사업대상자** : 농촌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해 조직한 법인 또는 단체

① **지역 서비스 제공 활동** : 농촌 주민 등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 전반을 자발적인 연대와 협력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활동

* 고용,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복지, 환경, 문화, 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

< 지역 서비스 제공 예시 >

구분	예시
보건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원 이동 차량 운행 ○ 치매진단 검사, 건강교실 ○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원예치료) ○ 심리, 정서, 건강 이상 시 복지기관 연계
생활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용서비스, 이동식 세탁, 반찬배달, 장보기, 청소서비스 ○ 고령자·장애인 방문 목욕 서비스 ○ 안부확인, 단체급식, 생활 폐기물처리 서비스
교육,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 프로그램(인문학, 한글, 외국어, 독서, IT자격 등) ○ 영유아 보육 ○ 단체영화관람, 문화동아리 공연, 도서대여서비스
정주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도, 가전제품, 동파, 보일러, 전기 수리, 노후 불량 주택 점검 ○ 누전차단기, LED 등, 방충망, 가스차단기, 안전손잡이, 계단난간 설치, 도배, 실내 장판 교체 ○ 공동 사용시설 환경개선, 산책로 만들기, 방법 순찰
경제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일자리 연계, 판로 연계, 창업·취업 컨설팅

② **조직 형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비영리법인(민법) 또는 비영리단체일 것

③ **조직 구성** : 마을 돌봄반장(1명 이상)과 농촌 주민,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 기관·업체 등*이 공동체를 구성

* 사회·복지·의료 기관, 농촌돌봄농장, 세탁소, 반찬가게, 영화관, 수리업체 등

- 돌봄반장 역할 : 지역 내 돌봄 등이 필요한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수요 파악, 서비스 제공기관 탐색 및 연계, 사례관리 등

* 돌봄반장은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등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조직이 위촉하고 그 활동을 직접 주관

○ **우대요건** : 가점 부여(최대 5점)

- 여성 조직 대표 3점, 조직구성원 중 50% 이상 여성일 경우 5점, 농촌협약 체결 반영 사업 5점의 가점을 부여하되, 둘 이상 해당될 경우 최대 5점 부여

《 거점 농장 》

○ **사업대상자** : 신규 농장 및 공동체 발굴, 사업 설명회, 운영 컨설팅,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농업 확산 활동을 위해 권역별 선정된 조직

* 1년 이상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직

2.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e-나라도움 사용하여 사업비 집행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의거

《 농촌돌봄농장 》

○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 **강사비**: 사회적 농업 활동을 진행하는 강사의 각종 수업 및 레크리에이션 진행 비용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중 장애인·고령자 등의 농업실습 작업 보조, 건강 상태 모니터링, 이동 보조(복지시설, 자택, 병원 등) 등 비용

* 강사비는 강의·강연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농업 활동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활동을 보조하는 경우 집행 가능(보조 활동의 경우 자격 무관)

* 농촌돌봄농장 종사자(농장 대표 포함)도 요건에 해당되면 해당 부분에 한해 강사비 지원 가능

(집행기준)

구분	지급기준	
	최초1시간	초과시간
주강사	100,000원	50,000원
보조강사	60,000원	30,000원

- 강사비는 시간당 지급기준을 준수하되 1일 최대 8시간 이내
 - * 강사에게 별도의 여비는 지급 불가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타 시도 강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
 - 해당 지자체에 시간당 강사비에 대한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적용 가능
 - 보조사업 직전 연도 3회 이상 타 기관 출강 실적이 있는 경우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강사비 별도 산출 가능(지자체 담당자 승인 필요)
 - 프로그램 운영 전 농작업 준비(농장 정리 등)가 필요한 경우 보조 강사비 지급 가능(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없는 농장관리비 집행은 불가)
- **재료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사회적 농업 활동 및 참여자 수에 맞는 수량만큼 집행
 - * 활동 회당 1인 재료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
 - 다년생 묘목 구입은 원칙적 불가하며, 프로그램 특성상 구매가 필요한 경우 다년간 활용이 원칙으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모종, 흙, 비료, 농기구 구매 등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위한 만큼만 재료비로 산출하여 집행
- **시설사용료:** 교육·토론·축제 등 사회적 농업 활동 진행 시 장소 임차료, 장애인·고령자 등이 이용하는 눈·밭·작업장 등에 대한 이용료 등
- * 사회적 농업 활동과 관계없는 사회적 농업 실천 조직의 농지, 건물 매입 또는 임대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교통비:**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이동 비용(자택-복지시설 간 이동 등)
- **기 타**
- 식비는 1인 1식 기준 9,000원으로 수혜자 인원수만큼만 집행하며, 점심 식사 시간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프로그램일 경우만 집행 가능
 - 다과비는 1인 1회 기준 3,000원으로 수혜자 인원수만큼만 집행
 - 화재 및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조사업 수혜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 가입(필수)
 - *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3 기준 총족)

※ 사회적농업 활동운영비는 전체 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60% 이상

○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 사회적 농업을 위한 소모임, 세미나, 워크샵, 현장 견학, 다과비용, 교통비, 등 제반 비용

※ 네트워크 구축비는 전체 사업비(시설개선비 제외)의 20% 이내

○ 기획비

- 농업실습, 기술교육, 지역사회 융화 등 대상에 맞춘 사회적 농업 활동을 발굴· 기획· 개발하거나 사회적 농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경영 컨설팅 비용, 상품기획 및 마케팅 비용 등

○ 판로 확보 및 사회적 농업 활동 홍보비용 등(지역사회에 대한 단순 기부는 제외)

○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연간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1년 차(예비단계)는 집행 불가하며, 2년차부터 집행 가능

* 타 사업비가 들어간 공동시설 내 설치 금지(ex.마을회관, 경로당 등)

- 사회적 농업 이용자가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안전시설· 휴식시설, 임시 거주시설 등 설치· 개보수 비용

* 기존 건물· 시설· 농지 등 개조 포함

- 냉· 난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음향기기 구입 등 자산취득 비용

* 다만, 임차를 우선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취득 허용

- 사회적 농업 이용자의 자활 및 소득 증가를 위한 농산물 생산· 가공· 판매시설 등 설치· 개보수 비용

※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 단, 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 가능

○ '25년도에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마을기업(행정안전부)· 자활기업(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자활근로사업· 장애인복지시설지원사업(보건복지부) 등 유사한 국비· 지방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지방비 지원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과 구분하여 운영(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중복지원 불가)

《 공동체 단위 농촌돌봄농장 》

○ 사회적 농업 및 지역사회 기여 활동 운영비, 네트워크비, 홍보비, 시설비

※ 활동비는 시설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집행

※ 네트워크 구축비는 전체 사업비(인건비, 시설개선비 제외) 20% 이내 집행

※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30% 이내 집행

○ 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료 집행 가능) 및 활동비

* 중간지원 기관이나 대표농장에 소속된 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 그 외 농촌돌봄농장의 자금 사용 용도를 준용함

※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 단, 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 가능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서비스공동체가 수요자에게 서비스 공급 시 소요되는 서비스 활동 비용

- 강사비는 사회적농업 활동에 한해서만 집행가능하며, 농촌돌봄농장 강사비 기준 준용

- 농촌주민생활돌봄 활동 여비는 조직 구성원 및 돌봄공동체 참여·연계 기관에 대해 지급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근무지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을 준용하여 아래의 방법 중 선택하여 지급

① 4시간 이상 활동은 2만원/일, 4시간 미만 활동은 1만원/일 집행

② 여비 지급기준을 준용하지 않을 경우 교통비, 식비(9천원 이내) 실비 지급

* 여비 산출방식 : 교통비(활동거리(km)×리터당 유류비÷자동차 연비) + 식비

- 조직구성원이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해당 분야 전문 사업자(사업자등록 업체)에 서비스를 의뢰하고,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은 '서비스 의뢰비'로 처리

* 서비스 의뢰 계약서(또는 견적서)를 작성해야 하며, 유사 서비스 소요 비용과 비교하여 적절한 비용으로 계약

※ 서비스 활동비는 시설개선비, 인건비를 제외한 총 사업비의 60% 이상 집행

- **재료비:** 서비스 공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비(소모성 물품)

- 마을 경관 조성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장기 사용 물품 구입 시 사전 지자체 승인을 통해 집행 가능

○ 소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 공동체 정기모임, 세미나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 현장 방문, 홍보, 마케팅 등 운영 비용 전반

* 네트워크 구축비는 전체 사업비(인건비, 시설개선비 제외) 20% 이내 집행

○ 지역 생활 돌봄 서비스 지속 공급을 위해 필요한 시설 개보수 및 장비 구입은 전체 사업비(인건비 제외)의 30% 이내 집행

* 1년 차(예비단계)는 집행 불가하며, 2년차부터 집행 가능

○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4대 보험료 집행 가능) 및 활동비

○ 그 외 농촌돌봄농장의 자금 사용 용도를 준용함

※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 단, 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 가능

《 거점농장 》

○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 기획비, 강사비, 재료비, 신규 농장 및 공동체 발굴, 사업 설명회, 운영 컨설팅, 자문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출장비, 유인물비, 홍보비, 회의비(다과, 식대), 인건비(4대 보험료 집행 가능) 등

○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 거점농장 활동을 위한 시설 개보수, 기자재(집기) 구입 비용 등

※ 유의사항

- 보조금 집행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할 수 없음. 단, 지자체장 승인을 받은 경우 거래 가능

3. 사업계획 변경의 승인

- 사업계획의 변경은 사업의 목적 및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지원 자격(요건)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능
 - 사업비 금액 조정, 사업내역 변동 등 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회적 농업 조직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시·군에 제출하고, 시·도에서 변경 승인 후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 내역 제출(반기별, 최종 11월 이내)
 - 사업비 조정금액이 총사업비의 30% 이내인 경우 시·군에서 변경 승인

4. 지원한도액 기준 및 기간 : '25년 예산 확정 시 변경 가능

《 농촌돌봄농장 》

○ 지원한도액

- 사회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수혜자 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개소당 평균 55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며, 사업 대상자의 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기준액에서 가감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경쟁력 있고 준비된 농촌돌봄농장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단계로써 25백만원 수준에서 지원액 산정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공동체 단위 농촌돌봄농장 》

○ 지원한도액

- 총 79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 결합된 농장이 프로그램을 수행한 만큼 사업비(49백만원)를 분배
 - * 농장별 역량을 고려하여 연간 사업계획을 사전에 협의

- 지원 인력(중간지원 기관 또는 대표농장 소속)에 대해 30백만원 한도 내에서 인건비 및 활동비 지원

○ 지원기간 : 5년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 지원한도액

- 총 69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39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매해 신규 사업자의 경우 예비 단계로써 50백만원(공동체 운영 및 서비스 제공 비용 20백만원, 중간지원 인력의 인건비 및 활동비 30백만원) 수준에서 지원

○ 지원기간 : 5년(예비단계 1년 포함)

* 매년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년도 지원 축소·중단 가능

《 거점 농장 》

○ 지원한도액

- 사업대상자의 사업 계획 및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개소당 평균 150백만원 수준으로 기준액을 산정하여 차등 지원(국비 70%, 지방비 30%)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

○ 지원기간 : 3년

* 매년 농식품부, 농촌서비스활성화지원센터, 지자체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지원 중단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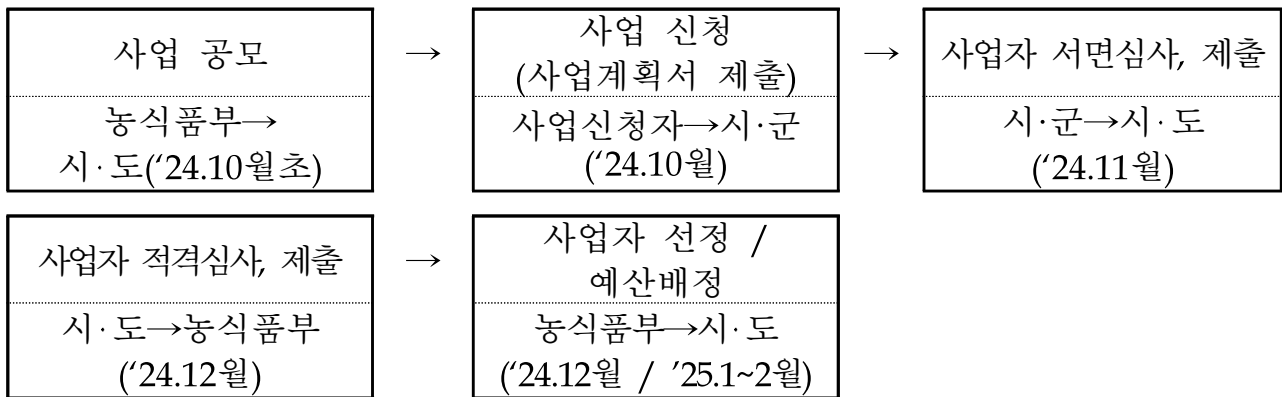
※ 농촌돌봄농장 -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 거점농장 비교

항목	농촌돌봄농장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 돌봄공동체	거점농장
사업 내용	○ 사회적 농업 활동비 지원	○ 사회적 농업 및 지역 사회 기여 활동비 지원 ○ 중간지원 기관 또는 대표농장의 인건비 지원	○ 주민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 공동체의 운영비 및 서비스제공비 지원 ○ 돌봄반장의 인건비 지원	○ 사회적 농업 및 공동체 조직 확산 활동 지원
사업 대상자	○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촌 지역 소재 조직 * 법인이나 단체	○ 다수의 농촌 돌봄농장 (최소 3개 이상)과 중간지원 기관이 협력하는 공동체 조직 또는 대표농장을 중심으로 다수의 농장이 결합된 협동조합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사회·의료·복지기관 또는 단체, 민간업체 등이 연대하여 구성된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조직 *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 1년 이상 농촌 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한 경력이 있거나 지역 내 공동체, 지역개발, 복지 등 분야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는 조직
지원 금액	○ 개소당 평균 55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25백만원	○ 개소당 평균 79백만원	○ 개소당 평균 69백만원 * 1년차(예비단계): 50백만원	○ 개소당 평균 150백만원
지원 기간	○ 5년간	○ 5년간	○ 5년간	○ 3년간
활동 내용	○ 사회적 약자와 농업 생산활동 등을 통한 돌봄, 교육, 고용효과를 도모하는 활동	○ 인접한 곳에 위치한 개별 농장들이 협력하여 사회적 농업을 실천 확산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활동	○ 안부 확인, 반찬배달 등 노인 돌봄 서비스, 집수리 업체 연계·지원, 교육업체 등과 연계하여 지역 아동 보육 서비스 * 돌봄 반장 : 주민 대상 서비스 수요 발굴, 관련 기관·업체 네트워크 구축, 서비스 공급 지원, 사례관리, 홍보·교육·컨설팅 등	○ 신규농장 및 공동체 발굴, 사업설명회, 운영 컨설팅, 자문, 모니터링,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 농업 및 공동체 확산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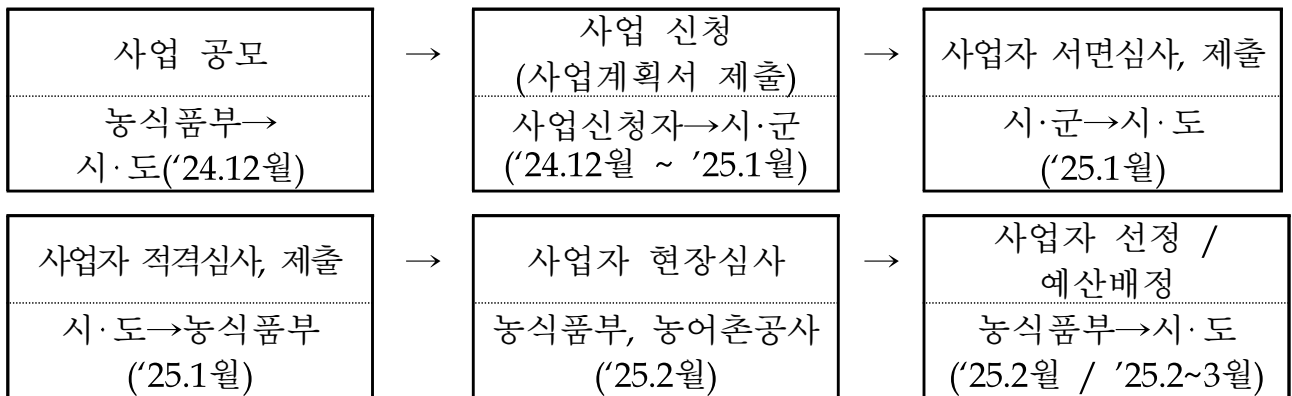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추진체계

- 사업주관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자 : 시·도(시·군)
- 사업추진절차(계속 사업자)



- 사업추진절차(신규 사업자)



※ 거점농장(신규 사업자 3개소: 경기·인천, 강원, 전북)

- ▶ 사업 공모·신청('24.11월) → 서류심사, 현장심사('24.12월) → 사업자 선정('24.12월)

2. 사업신청단계

《공통 사항》

- 농식품부는 시·도별 계속 사업자 수준의 예산 가내시 통보(9월)
- 농식품부는 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한 후 사업 공모(10월)를 진행

《신규 사업자》 : '25년 신규 사업자 공모는 '25년 예산 확정 후 별도 공지

- 사업을 희망하는 사회적 농업 조직은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서식)와 자금 사용계획 등을 포함한 '사회적 농업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소재 시·군에 제출
-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은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사업 시행 가능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적절성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시·도에 사업대상자 추천
- 시·군의 지원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시·도는 구비서류의 완비 여부 등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농식품부에 사업대상자 추천

《계속 사업자》

- 기존 사업자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 서식)와 "25년도 사업계획서'(별지 제2-1호, 제2-2호, 제2-3호, 제2-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3. 사업자 선정단계

《신규 사업자》

- 시·군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사업대상자 서면심사하여 선정하고, 선정안을 시·도에 송부
- 시·도에서 서면심사로 선정된 사업대상자에 대해 선정기준에 따른 서류·현장 심사를 거쳐 선정안 마련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송부
 - * 선정기준은 농식품부에서 마련하여 시·도에 통보 예정
 - * 현장심사 시 권역별 거점농장과 동행하고 선정안에 거점농장의 의견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사업 지원 대상자 선정
 - 심사위원회는 민간 전문가를 1/2 이상을 포함해 5명 내·외로 구성
 - *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회와 사업자 간 조율에 따라 사업 계획이 일부 수정되거나 지원 금액이 계획서보다 감액될 수 있음

《계속 사업자》

- 기존 사업자는 농식품부, 지자체의 사업점검 결과 및 사업계획서를 통해 심사

《공통 사항》

- 지원 대상이 선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결과를 시·도에 알리고, 시·도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익년도 1~2월)

4. 자금배정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도의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시·도별 자금 배정(‘25.1~2월) 추진
- 시·도는 배정 자금을 시·군에 재배정하고, 시·군은 사업 대상자별로 최종 지급액 확정(‘25.1~2월)

5. 이행점검단계

- 시·군은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현장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보고서(양식 별도 송부)를 작성하여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대상 : 농촌돌봄농장,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거점농장
 - 점검항목 : 사업계획 이행 여부 및 진행 상황, 사업비 집행 현황, 지원 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

6. 사후관리단계

- 점검 결과에 따라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절하게 자금을 집행한 경우 농식품부는 자금 회수, 익년도 신청 대상 제외, 시·도 배분 사업자 수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은 보조금이 부적절하게 지급된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의 조치하여야 함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대상자는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익년도 1월 중순)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제출
- 농식품부는 시·도에서 제출한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여 사회적 농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도 및 시·군에 대해 익년도 사업 배분 시 사업량 추가 배정 등 우대하거나 사업대상자의 사업비 차등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음

8.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타 사업비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예산 관련 법령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름

<별첨> 별지서식

(농촌돌봄농장)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조직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19xx.xx.xx (남 / 여)
소재지	(주소)	(E-mail)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실무자	휴대폰번호	E-mail
조직 형태	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제품	
보험가입현황			전년도매출액	백만원
사회적 농업 종사자 수		상근	명	비상근
				명

1. 기존 활동 소개 (신규 신청의 경우만 작성)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예시)

- □□군 □□면에서 3,300㎡ 규모로 양배추, 오이 등을 재배
- 배추를 재배(2,300㎡), 가공하여 직원 3명(청년1, 고령자1)이 김치를 만들어 판매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예시) ○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농업 생산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소정의 임금 지급, 그 장애인은 무료하게 보내던 낮 시간에 농장에 출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활동에 따른 임금을 적게나마 받아 가게에 보탬이 됨, 서툴지만 갈수록 농업기술이 손에 익어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따른 재활 효과도 있었음

- 지역 아동센터/복지관/특수학교/특수학급 아동·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농업 생산 관련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여기도록 함, 아동들이 복지관/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마을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데 농업이 활동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꾸준히 농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작물 재배량이 적고 이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방문,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2.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실적 및 계획(개요)

		내 용	지원 년도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문제와 연결 (예시) 직업훈련을 통해 정신질환 장애인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삶의 질 향상, 사회 통합 목표	
사업 내용	1년차 (예비)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25년
	2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우리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3년차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4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농촌돌봄농장들까지 확대	
	5년차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② 프로그램명				
상세 유형 (중복가능)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활동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1회당 수혜인원 <small>*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small>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명 / 회당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성()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연령별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17세 이하)	()명	
		<input type="checkbox"/> 성인(18세 - 64세)	()명	
		<input type="checkbox"/> 고령자(65세 이상)	()명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명			
상세 분류 (중복가능)	(성인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치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학교밖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장애(<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여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범죄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_____			
연계 기관명	ex. 000치매안심센터 000발달주간보호센터,			
'25년 총 운영 계획 횟수	회 예정	활동 기간	0월~0월 (0개월 간)	
1일 활동시간	시간 / 1일	활동주기	<input type="checkbox"/> 정기 : 주 0회, 월 0회 <input type="checkbox"/> 단기 : 1박2일, 2박3일 <input type="checkbox"/> 연중 상시 ¹⁾	

※ 다양한 사회적 약자 그룹이 사회적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그룹이 한가지 프로그램을 주기적 활동하되, 프로그램 간 중복되어 참여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기관/단체명	기관유형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연계기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협력기관		

***기관 유형**

- ① 연계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 ② 협력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 목표

-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주요사업 세부내용

- 쭈,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 감귤, 쭈,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마케팅·홍보방안

-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향후 계획

-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2. 지역특산품·지역자원 활용 사업

사업 내용

- 반찬 제조 판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케팅·홍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장과 제품을 이용대상자(거래처 및 일반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홍보 ○ 배너설치, 전단지, 지역신문, 명함 등 지면 광고 □ 매출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20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m ²),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m ²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 (천원)
		합 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계	
		① 프로그램명	
		-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보조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재료비 * 재료별 상세기재	모종 : 4,000 원x 3 회x 30 명= 360,000원 상토 : 5,000 원x 1 회x 30 명= 150,000원
		-식비 및 다과비	식비: 원x 회x 명= 다과비: 원x 회x 명=
	-기타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 (천원)	
	② 프로그램명	-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보조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재료비 * 재료별 상세기재	재료명1: 원x 회x 명= 재료명2: 원x 회x 명=	
		-식비 및 다과비	식비: 원x 회x 명= 다과비: 원x 회x 명=	
		-기타		
		③ 프로그램명	-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보조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재료비 * 재료별 상세기재		재료명1: 원x 회x 명= 재료명2: 원x 회x 명=	
	-식비 및 다과비		식비: 원x 회x 명= 다과비: 원x 회x 명=	
	-기타			
	기 타		보험료	월 x 원
		취약계층 숙소 임차료	실 x 원 x 개월 =	
		취약계층 차량 유류비	거리(km) x 유가 ÷ 연비 (공무원 여비규정 자가용 여비 계산 준용)	
	네트워크 구축비	소계		
		교육 및 회의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워크숍		워크숍 개최 실비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현장 견학		현장 견학 실비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기획비	소계			
	컨설팅비	원 x 회 =		
홍보비	소계			
	현수막	원x 개		
	홍보물	원x 개		
	박람회	(숙소) 원, (교통) 원, (식비) 원, (재료비) 원		
시설비 (00농장)	소계			
	시설 개보수	1) 농촌돌봄농장 화장실 및 욕실 수리= 원x 식 2) 농촌돌봄농장 숙소 수리= 원x 식		
	비품 구매	00 구매 = 원x 식		

<첨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활동 프로그램별 상세하게 작성)

활동(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과정명	
강사	
일시	년 월 일 ~ 월 일
세부 사항	(활동주기) 주 00회 (연간총횟수) 00회 (회당 소요시간) 00시간
장소	
목적 및 목표	<input type="checkbox"/> 목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목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세부 프로그램 계획 ※상세 기재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인원 : <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 <input type="radio"/> 1주차 : <input type="radio"/> 2주차 : <input type="radio"/> 3주차 : <input type="radio"/> 4주차 : <input type="checkbox"/> 운영 방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평가 방법	

[별지 제2-2호 서식]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공동체단위 농촌돌봄농장)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대표조직명	00마을만들기지원센터 또는 00협동조합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19xx.xx.xx (남 / 여)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유선번호) 043-000-0000 (휴대폰번호) 010-0000-0000		(E-mail)	
조직 형태	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제품	
보험가입현황			전년도매출액	
사회적 농업 종사자 수	상근	명	비상근	명
구성원	단체명 또는 조합원	대표자명	주소(군읍면)	휴대폰 번호
	00농업법인 / 이00			
	△△농업법인 / 박00			
	□□협동조합 /김00			
	□□협동조합 /이00			

1. 기존 활동 소개

(1) 농업 활동(주 사업) 소개

(예시)

- □□군 □□면에서 3,300㎡ 규모로 양배추, 오이 등을 재배
- 배추를 재배(2,300㎡), 가공하여 직원 3명(청년1, 고령자1)이서 김치를 만들어 판매

(2) 사회적 농업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사회적 농업 활동 또는 사회적 농업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예시)

- 마을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농업 생산활동에 정기적으로 참여시키고 소정의 임금 지급, 그 장애인은 무료로 보내던 낮 시간에 농장에 출근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활동에 따른 임금을 적게나마 받아 가계에 보탬이 됨, 서툴지만 갈수록 농업기술이 손에 익어 용돈벌이뿐만 아니라 신체활동에 따른 재활 효과도 있었음
- 지역 아동센터/복지관/특수학교/특수학급 아동·청소년들과 정기적으로 농업 생산 관련활동을 하면서 이들이 농업을 친숙하게 여기도록 함, 아동들이 복지관/학교 졸업 후 성인이 되어서도 마을에서 활동하며 살아가는 데 농업이 활동 수단일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꾸준히 농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작물 재배량이 적고 이동이 불편한 지역 어르신들을 방문, 농산물을 수매하여 판매

2.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업 사업 운영 실적 및 계획(개요)

	내 용	지원 년도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공동체 단위 사회적 농업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 문제와 연결 (예시) 00군 지역내 농촌돌봄농장과 사회적 약자 연결을 통한 사회적 농업 활성화 도모 및 사회통합에 기여	

		(예시) 정신질환 장애인, 고령자, 이주노동자에게 재기 달성 기회 제공	
사업 내용	1년차	대표농장: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주2회)	'24년
		A농장: 청소년 컴퓨터 입소생들에게 농업기반의 직업체험과 훈련을 통해 자립적 사회진출을 위한 기회제공 및 일자리 제공을(주1회, 3월~10월)	
		B농장: 00면내 고령자를 대상으로 텃밭 중심 프로그램 운영(주2회, 15명, 4월~10월)	
		C농장:	
		D농장	
	2년차	대표농장: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3회), 00면의 인근 농장들과 네트워크 구축	
		A농장: 00면내 이주노동자 대상으로 텃밭 중심 프로그램 운영(주2회, 15명, 4월~10월)	
		B농장: 직업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신규고용인원 2명 일자리 창출	
		C농장:	
		D농장:	
	3년차	대표농장: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진행(2회),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에 대한 사회적 농업 인큐베이팅,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매뉴얼 작성, 1명 신규 고용	
		A농장:	
		B농장:	
		C농장:	
		D농장:	
	4년차	대표농장: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네트워크 범위를 우리군 내 다른 면의 농촌돌봄 농장들까지 확대	
		A농장:	
		B농장:	
		C농장:	
		D농장:	
5년차	대표농장: 네트워크 구축된 농장들과 협력하여 정신질환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 프로그램 확대 실시, 1명 신규 고용		
	A농장:		
	B농장:		
	C농장:		
	D농장: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25년도 공동체단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 계획 상세 소개

* 연계된 농장 프로그램 별로 작성, 표를 복사하여 작성

활동 프로그램 계획				
대표 유형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 가장 비중이 높은 유형 택1			
① A농장	(프로그램명)			
상세 유형 (중복가능)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활동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1회당 수혜인원 <small>*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small>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명 / 회당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성()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연령별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17세 이하)	()명	
		<input type="checkbox"/> 성인(18세 - 64세)	()명	
<input type="checkbox"/> 고령자(65세 이상)		()명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명		
상세 분류 (중복가능)	(성인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치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학교밖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장애(<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여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범죄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_____			
연계 기관명				
'25년 총 운영 계획 횟수	회 예정	활동 기간	0월~0월 (0개월 간)	
1일 활동시간	시간 / 1일	활동주기	<input type="checkbox"/> 정기 : 주 0회, 월 0회 <input type="checkbox"/> 단기 : 1박2일, 2박3일 <input type="checkbox"/> 연중 상시 ¹⁾	

1) 연중상시일 경우 월 22일 기준으로 운영 횟수 산정 ex)5~9월 연중상시 : 5개월×22일 = 110회

② B농장	(프로그램명)		
상세 유형 (중복가능)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활동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1회당 수혜인원 *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명 / 회당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성()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연령별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17세 이하)	()명
		<input type="checkbox"/> 성인(18세 - 64세)	()명
		<input type="checkbox"/> 고령자(65세 이상)	()명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명		
상세 분류 (중복가능)	(성인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치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학교밖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장애(<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여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범죄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_____		
연계 기관명			
'25년 총 운영 계획 횟수	회 예정	활동 기간	○월~○월 (○개월 간)
1일 활동시간	시간 / 1일	활동주기	<input type="checkbox"/> 정기 : 주 ○회, 월 ○회 <input type="checkbox"/> 단기 : 1박2일, 2박3일 <input type="checkbox"/> 연중 상시 ¹⁾

③ C농장		(프로그램명)		
상세 유형 (중복가능)	① 돌봄 ② 치유 ③ 교육 ④ 고용 ⑤ 기타			
활동내용	구체적으로 기재			
1회당 수혜인원 *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명 / 회당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성()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연령별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17세 이하)	()명	
		<input type="checkbox"/> 성인(18세 - 64세)	()명	
		<input type="checkbox"/> 고령자(65세 이상)	()명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명			
상세 분류 (중복가능)	(성인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치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학교밖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장애(<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여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범죄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_____			
연계 기관명				
'25년 총 운영 계획 횟수	회 예정	활동 기간	○월~○월 (○개월 간)	
1일 활동시간	시간 / 1일	활동주기	<input type="checkbox"/> 정기 : 주 ○회, 월 ○회 <input type="checkbox"/> 단기 : 1박2일, 2박3일 <input type="checkbox"/> 연중 상시 ¹⁾	

※ 다양한 사회적 약자 그룹이 사회적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참여그룹이 한가지 프로그램을 주기적 활동하되, 프로그램 간 중복되어 참여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

4. 지역 네트워크 구축 계획

연계 기관/단체명	기관유형	연계 필요성 및 활동 내용	비고
○○ 복지관	연계기관	복지관 소속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 진행, 장애인들의 농장 출퇴근 보조 역할, 각 장애인 사례관리 등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협력기관		

***기관 유형**

- ① 연계기관 : 수혜자 선정하거나 소개해준 기관
- ② 협력기관 : 프로그램 자문 및 활동 지원 협력 기관
- ③ 지역사회 : 지역사회 기관 및 단체, 주민이 참여한 포럼이나 학습모임

5. 농업 경영 등 소득사업 계획

- * 사회적 농업 활동 유지에 필수적인 소득사업(농업 경영 등) 운영 계획 적시
- * 지속가능성 및 사회적 농업의 취지를 고려할 때, 소득사업과 사회적 농업 활동은 완전히 별개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을 것을 권장
- * 단, 사회적 농업 활동 자체는 직접 수익을 낼 수 없음을 감안

(예시)

1. 농·임·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사업 목표

- 취업시장 진입이 어려운 근로능력 미약 저소득 주민의 일자리 창출
- 1차 산업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

주요사업 세부내용

- 쑥,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 감귤, 쑥,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마케팅·홍보방안

- 홈페이지에 사업홍보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향후 계획

-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 양질의 농산물 생산으로 사업단별 연계 부가가치 창출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대표농장>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m ²),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m ²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A농장>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m ²),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m ²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C농장>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m ²),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농 장	비닐하우스 3개동 3,300m ² 소유	비닐하우스 3개동을 장애아동 농장으로 활용 (상추 등 쌈채소 재배)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 사회적 농업 활동에 활용할 시설 현황만 작성

7. 예산 집행 계획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합 계			
소계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사회적 농업 프로그램 운영 관련	A농장 프로그램명	
		- 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 보조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 재료비 * 재료별 상세기재	모종 : 4,000 원x 3 회x 30 명= 360,000원 상토 : 5,000 원x 1 회x 30 명= 150,000원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원x 회x 명= 다과비: 원x 회x 명=
		- 기타	(상세내역 기재) : 원
		B농장 프로그램명	
		- 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 보조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 재료비 * 재료별 상세기재	모종 : 4,000 원x 3 회x 30 명= 360,000원 상토 : 5,000 원x 1 회x 30 명= 150,000원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원x 회x 명= 다과비: 원x 회x 명=
		- 기타	(상세내역 기재) : 원
		C농장 프로그램명	
		- 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 보조강사비	명x 원x 회= (시간/회당:)
	- 재료비 * 재료별 상세기재	모종 : 4,000 원x 3 회x 30 명= 360,000원 상토 : 5,000 원x 1 회x 30 명= 150,000원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원x 회x 명= 다과비: 원x 회x 명=	
	- 기타	(상세내역 기재) : 원	
	기 타	보험료	월 x 원
		취약계층 숙소 임대료	실 x 원 x 개월 =
		취약계층 차량 유류비	거리(km) x 유가 ÷ 연비 (공무원 여비규정 자가용 여비 계산 준용)
소계			
네트워크 구축비	교육 및 회의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 = - 교통비·식비 등 원x 회	
	워크숍	워크숍 개최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현장 견학	현장 견학 실비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기획비	소계		
	컨설팅비	원 × 회 =	
홍보비	소계		
	현수막	원 × 개	
	홍보물	원 × 개	
시설비	소계		
	시설 개보수	1) A농장 농장 화장실 및 욕실 수리= 원 × 식 2) B농장 숙소 수리= 원 × 식	
	비품 구매	00 구매 = 원 × 식	
지원 인력 활동비	소계		
	인건비	원 × 개월 × 명 =	
	출장비	거리(km) × 유가 ÷ 연비 (공무원 여비규정 자가용 여비 계산 준용)	
	4대 보험비 (기관부담금)	월 × 원 × 개월	

<첨부> 프로그램 운영계획서 (※활동(프로그램)별 상세하게 작성)

활동(프로그램) 운영 계획서

과정명	
농장명	
강사	
일시	년 월 일 ~ 월 일
세부 사항	(활동주기) 주 00회 (연간총횟수) 00회 (회당 소요시간) 00시간
장소	
목적 및 목표	<input type="checkbox"/> 목적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목표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기대효과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세부 프로그램 계획 ※ 상세 기재	<input type="checkbox"/> 대상 : <input type="checkbox"/> 인원 : <input type="checkbox"/> 교육 내용 <input type="radio"/> 1주차 : <input type="radio"/> 2주차 : <input type="radio"/> 3주차 : <input type="radio"/> 4주차 : <input type="checkbox"/> 운영 방법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평가 방법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조직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19xx.xx.xx (남/여)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조직 형태	<input type="checkbox"/> 협동조합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 <input type="checkbox"/> 민법상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생산제품	
				수혜지역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종사자 수		상근	명	비상근	명
참여·연계 기관(단체)	기관·단체명	대표자명	주소(군읍면)	전화번호	협력 내용
돌봄반장 인적사항	성명	소속	주택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및 성별
					19xx.xx.xx (남/여)

1. 기존 활동 소개 (신규 신청의 경우만 작성)

(1)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소개

(예시)

- 청소년쉼터의 사회적진출 청소년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지원 및 일자리 제공
- 장애인공동체 및 관련 복지기관 연결을 통한 돌봄 제공

(2)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활동 소개

* 그동안 해왔던 농촌 경제·사회 서비스 제공과 유사한 활동이 있을 경우 작성

(예시)

- 00군 관내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00 식당과 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반찬만들기, 반찬배달을 추진했고, 독거어르신들의 안부 살피기 등 활동

2.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사업 운영실적 및 계획(개요)

	내 용	지원 년도
사업 목표	* 아래 적은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와 연결	

		(예시) 고령자 생활 돌봄 활동과 농촌 지역문화 활동 확산으로 농촌공동체 활성화	
사업 내용	1년차	지역 주민 경제복지 서비스 수요파악, 네트워크 연계기관 확립	'25년
	2년차	고령자 대상 돌봄활동, 반찬배달 등 생활서비스 제공	
	3년차	지역주민 대상 작은영화관 추진등 문화서비스 제공	
	4년차	...	
	5년차	...	

* 사업 내용은 연차별로 작성할 것을 권장하나, 연차별 작성이 어려울 경우 합쳐서 작성도 가능

3. '25년도 운영 계획 상세 소개

①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복지 <input type="checkbox"/> 교육,문화 <input type="checkbox"/> 정주여건 <input type="checkbox"/> 경제활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 활동 내용				
수혜지역 (읍면단위)				
수혜인원 <small>*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small>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명 / 회당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성()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연령별 수혜인원 수 (※해당 시 ■)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17세 이하)	()명	
		<input type="checkbox"/> 성인(18세 - 64세)	()명	
		<input type="checkbox"/> 고령자(65세 이상)	()명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명			
상세 분류 (중복가능)	(성인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치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학교밖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장애(<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여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범죄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_____			
'25년 총 운영 계획 횟수	회 예정	제공주기	<input type="checkbox"/> 정기 : 주 ○회, 월 ○회 <input type="checkbox"/> 단기 : 1박2일, 2박3일 <input type="checkbox"/> 연중 상시	
1일 서비스 제공 시간	시간 / 1일			

②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복지 <input type="checkbox"/> 교육,문화 <input type="checkbox"/> 정주여건 <input type="checkbox"/> 경제활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 활동 내용				
수혜지역 (읍면단위)				
수혜인원 <small>*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small>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명 / 회당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성()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연령별 수혜인원 수 <small>(※해당 시 ■)</small>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17세 이하)	()명	
		<input type="checkbox"/> 성인(18세 - 64세)	()명	
		<input type="checkbox"/> 고령자(65세 이상)	()명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명			
상세 분류 (중복가능)	(성인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치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학교밖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장애(<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여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범죄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_____			
'25년 총 운영 계획 횟수	회 예정	제공주기	<input type="checkbox"/> 정기 : 주 ○회, 월 ○회 <input type="checkbox"/> 단기 : 1박2일, 2박3일 <input type="checkbox"/> 연중 상시	
1일 서비스 제공 시간	시간 / 1일			

③ 서비스명				
서비스 유형	<input type="checkbox"/> 보건의료 <input type="checkbox"/> 생활복지 <input type="checkbox"/> 교육,문화 <input type="checkbox"/> 정주여건 <input type="checkbox"/> 경제활동 <input type="checkbox"/> 기타()			
서비스 활동 내용				
수혜지역 (읍면단위)				
수혜인원 <small>* 1회당 수혜인원 수는 수혜인원 성별 합과 연령별 수혜인원합 각각과 일치해야함</small>	1회당 수혜인원 수	총 ()명 / 회당		
	1회당 수혜인원의 성별	<input type="checkbox"/> 남성()명 <input type="checkbox"/> 여성()명		
	연령별 수혜인원 수 <small>(※해당 시 ■)</small>	연령별 수혜인원 수	<input type="checkbox"/> 아동/청소년(17세 이하) ()명	<input type="checkbox"/> 성인(18세 - 64세) ()명
			<input type="checkbox"/> 고령자(65세 이상) ()명	
		장애를 가진 수혜인원 수	()명	
상세 분류 (중복가능)	(성인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고령자) <input type="checkbox"/> 독거노인 <input type="checkbox"/> 치매 <input type="checkbox"/> 기타() (아동/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학교밖청소년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장애(<input type="checkbox"/> 발달, <input type="checkbox"/> 정신, <input type="checkbox"/> 신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여성) <input type="checkbox"/> 다문화 <input type="checkbox"/> 경력단절 <input type="checkbox"/> 미혼모 <input type="checkbox"/> 범죄피해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_____			
'25년 총 운영 계획 횟수	회 예정	제공주기	<input type="checkbox"/> 정기 : 주 ○회, 월 ○회 <input type="checkbox"/> 단기 : 1박2일, 2박3일 <input type="checkbox"/> 연중 상시	
1일 서비스 제공 시간	시간 / 1일			

4. 돌봄반장 활동계획

* 돌봄반장 역할 및 활동내용

돌봄반장 역할	활동 내용	비고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매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0군 또는 00 읍·면내 수혜자 발굴 - 매월 1회 이상 서비스 대상자 발굴을 위한 협력기관 방문 - 대상자 방문 및 수요 면담조사(1분기) - 서비스조직과 수혜기간 연결 및 수혜자 관리를 위한 DB화(2분기) 	
연계조직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조직별 활동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3-4분기) - 수혜대상자의 사회적 농업 활동으로 인한 변화사항 체크 - 활동사항 체크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 모니터링 내용 공유 및 피드백을 통한 활동사항 점검 및 개선 	
교육, 컨설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 조직 교육 및 컨설팅 실시(1분기~4분기) - 경제사회서비스 제공 활동을 위한 교육(월 1회) -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현장활동 컨설팅(월1회) 	

	- 선진사례 탐방: 00도 00군 00서비스공동체 2회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기관 간 지속적인 소통 및 활동 계획 수립 -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계획 수립 - 매월 1회 지역네트워크 소통 회의 - 서비스 제공계획 및 협의(1분기) - 서비스 제공 점검 및 사후관리 방안마련 - 서비스 대상자 발굴 및 매칭 관련 참여농장 협의 - 다음, 네이버, 사회적농업 포털 등을 이용한 원활한 소통추진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공동체 활동 홍보 - SNS를 활용한 지속적인 활동 홍보 - 지역신문, 방송 등을 활용한 전략적 홍보계획 수립 - 활동 사례집 발간 	
기타		

5. 기금·재원 마련 계획

* 주민조직이 지속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금·재원 마련에 대한 운영 계획 적시

<p>(예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지역주민 및 지역기업 기부물품, 마을발전기금 활용 등 <input type="checkbox"/> 주요 소득사업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쭈, 모시, 감귤 등 농산물 가공 위탁사업 ○ 감귤, 쭈, 채소, 화훼류 재배 등 친환경 영농 ○ 야생초차 재료 채취, 판매 <input type="checkbox"/> 매출 확보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 매장운영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장을 홍보하고 판매전담 인력을 확보하여 매장 판매율 증가 노력 ○ 외부 마트 입점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입점마트: 행복마트, 월드마트 -> 2020년 배추김치 납품이 불가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상품의 개발 또는 입점마트 추가 확보 노력 ○ 외부 유통을 통한 판매: 전체 매출의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근 영어조합법인 연계한 수도권지역으로의 납품 실시 ○ 복지관 아동저녁급식: 전체 매출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액은 작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으므로 급식대상 거래처 확보 방안도 고민 <input type="checkbox"/> 수익 산출 		
구분	금액	산출 근거
농산물 가공		
영농사업 (판매 금액)		
합 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향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 생산 가공사업 확대(감귤청, 감귤잼 연구 중) ○ 생산 관련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영역 다양화(인근 어린이집 연계) 		

6. 시설 현황 (표 안은 예시임)

시 설 명	특징(시설규모(m ²),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교육장	1개동(지역개발사업으로 설립)		
체험장			
숙박시설	2개동(xx도 도비사업으로 설립)		
식당시설			
휴게시설			

7. 예산 집행 계획

구분	항목	산출내역	금액(천원)	
합 계				
돌봄반장 활동비	소계			
	인건비	월 원× 명× 개월=		
	모니터링비	출장내역에 따라 실비 산출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4대 보험비 (기관부담금)	월 원× 개월		
농촌주민 생활돌봄공동체 활동 운영비	소계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 활동 운영비	①서비스명		
		- 활동여비	명× 원× 회= (시간/회당:)	
		- 재료비	재료명1: 원× 회× 명= 재료명2: 원× 회× 명=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원× 회× 명=	
		- 기타		
		②서비스명		
		- 서비스료비	명× 원× 회= (시간/회당:)	
		- 재료비	재료명1: 원× 회× 명= 재료명2: 원× 회× 명=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원× 회× 명=		
	- 기타			
	사회적농업 활동 운영비	③프로그램명		
		- 감사비	명× 원× 회= (시간/회당:)	
		- 보조강사비	명× 원× 회= (시간/회당:)	
		- 재료비	재료명1: 원× 회× 명= 재료명2: 원× 회× 명=	
		- 식비 및 다과비	식비: 원× 회× 명= 다과비: 원× 회× 명=	
		- 기타		
	네트워크 구축비	소계		
		교육 및 회의	교육 및 회의 참석 실비 = - 교통비·식비 등 원× 회	
		워크숍	워크숍 개최 = - 교통비·식비 등 원× 회	
기획비	소계			
	컨설팅비	원 × 회 =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실비 = - 인원, 횟수 등을 포함하여 집행항목별 상세 기재		
홍보비	소계			
	현수막	현수막 = 원× 개		
	안내판	안내판 = 원× 개		
	홍보물	홍보물 = 원× 개		

<첨부> 서비스 운영계획서

(※활동(서비스)별 상세하게 작성, 사회적 농업 활동의 경우 농촌돌봄농장 활동운영계획서(00p)로 작성)

서비스 운영계획서

서비스명	반찬 나눔 서비스			서비스 방식	자체 추진 / 업체 의뢰		
목적 및 내용							
서비스 운영 장소	○○협동조합 공유 부엌			서비스 지역	○○리, △△리		
연간 수혜 인원	200명			대상자	독거노인		
				대상자 연령대	80~90대		
연간 운영 횟수	20회			대상자 선정 방법	이장단 협의회 회의를 거쳐 선정		
제공 주기	주 2회			추진 주체 및 의뢰/협력/연계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인원(명)
					계획	○○협동조합	2
실행	수혜자 선정, 식단 선정						
	기타	○○리 부녀회	3				
소요 시간		0 시간			반찬 제조 및 배달		
	주민자치회				2		
추진 시기	20xx.00.00~20xx.00.00 (0개월 간)			기기 및 물품 대여			
회당 소요비용	천원						
소요 예산 (단위:천원)	활동비/ 서비스의뢰비	재료비	식비	다과비	기타	합계	
						0	

+ 추가 검토 필요

서비스별 상세운영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비스 - 서비스제공자 : - 참여자별 역할 : - 재료 구입방식 - 서비스 이용방식 :
----------------	----------------------------------------------------------------------------------------------------------------------------------------------

(거점농장)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계획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및 성별	19xx.xx.xx (남 / 여)
소재지	(주소)			자본금	백만원
	(유선번호) (휴대폰번호)		(E-mail)		
조직 형태	농업회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생산제품		
보험가입현황			전년도매출액		
고용현황 (현재기준)	(상근) 명 (비상근) 명		사회적농업 종사자 수	(상근) 명 (비상근) 명	

1. 기존 활동(사업) 소개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 / 지역내 공동체, 지역개발 등 추진실적

○

2. 거점농장 사업 운영 실적 및 계획(개요)

구분	내 용	지원년도
사업목표		
사업 내용	1년차	
	2년차	
	3년차	

3. '25년도 세부운영 계획

*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필요시 표를 이용하여 작성

신규 개소 발굴 및 자문·홍보 현황 및 계획

○

□ 지역 네트워크 구축 현황 및 계획

○

연계 대상 <i>* 보건·복지·교육기관 농업관련 기관 기타 기관</i>	주요 내용	비고
○○ 복지관	지역 내 장애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농업 참여 의사를 조사하고, 사회적 농업 활동 참가 시 활동 보조인력으로 복지관 직원이 동행하는 등 협력관계 구축(‘18.5~)	복지관에서 전담인력 2명 배정
○○군 보건소		

□ 전문 인력 확보 현황 및 계획

분야(역할)	주요 내용	비고
신규 개소 발굴, 자문·홍보	사회복지기관 근무 경험자 1명을 신규 고용하여 농촌돌봄농장에 대한 자문, 현장 교육 역할 수행 예정	신규 고용
네트워크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에 수년간 참여하며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신규 농촌돌봄농장과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 지원 예정	기존 인력

□ 홍보 등 기타 운영 계획

- (판로제공) 박람회 참가하여 사회적 농업 활동 홍보 및 생산품 판매
- (홍보) 매뉴얼 제작, 뉴스레터, 인증현판 제작 등 추진계획
- (워크샵·간담회 등) 대상, 주요내용, 회차 등 구체적 계획

□ 시설 구축 현황 및 계획

시설명	특징(시설규모(m ²), 소유자 등)		활용 계획	비고
교육장	현황	1개동(00군 소유 건물 무상 임차)		
	계획	1개동 신축		
식당시설	현황			
	계획			
휴게시설	현황			
	계획			

□ 예산 집행 계획

구 분	항 목	지출 금액 (천원)	비 고(산출 세부내용)
인건비			
	소 계	0,000	
활동운영비			
	소 계	0,000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소 계	0,000	
시설비			
	소 계	0,000	
합 계		150,000	

※ 거점농장 역할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채용,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교재(매뉴얼) 제작, 교육장 설치(집기 구입 포함) 등 관련 비용 지원

* 거점농장 개소당 150백만원(국비 70%, 지방비 30%)

[별지 제3호 서식]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변경 신청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1. 업 체 명 :
2. 대표자 성 명 :
3. 연 락 처 :
4. 사업 변경내용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2호 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00 시장(또는 군수) 귀하

'25년도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 양식은 변경 불가하며, 항목에 맞게 모두 기재

1. 예산 집행 실적

사업자명	사업비(천원)						사유 (미집행 시)		
	국비		지방비					총계	
	계획	실적	도비		시군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00영농조합법인									

2. 일반현황

	최근 3년			증 감		비 고
	'23	'24(A)	'25(B)	(B)-(A)	(%)	
○ 매출액						증감사유, 특이사항 기재
○ 농장규모 (논, 밭 합계)						법인 소유, 법인 구성원 소유, 지역 주민에게서 임차 등 표시
- 논(m ²)						
- 밭(m ²)						
○ 법인 구성원 (조합원수, 대표, 고용인원 합계)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인 경우
- 조합원 수						
- 고용인원						

3. 사업 추진 실적(사업계획서 내용에 대한 실적)

목표	활동내용	일정	수혜자	수혜자수
(예시) 1. 어떤 장애인 대상 농업 활동(3월~10월)	모종심기, 방울토마토 수확 등	9월 (매주 수요일, 6시간)	발달장애인	10명

4. 사업 주요 성과

* 실적에 따른 정성적 성과 및 정량적 성과 작성

(예시)

○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발달장애인들 몇 명이 복지·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고도 마을에 거주하며 의미있는 오후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됨

○ 학생들의 농업의 가치 인식이 높아짐

- 몇 회의 농업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농업에 관심을 보임
- 일부 학생들은 장래의 직업으로 농업을 고려하게 됨(학생 인터뷰 등을 통해)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활동일지

활동 조직명 : ○○농장 / ○○돌봄공동체

활동 일자		활동자	※ 다수인 경우 별지에 기재			
활동 회차	○회 / 총 ○회	연계 기관				
활동 시간	오전 00시~00시까지 / 오후 00시~00시까지	소요시간	○시간			
수혜 인원	총 명 / 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명), <input type="checkbox"/> 고령자(명), <input type="checkbox"/> 아동(명), <input type="checkbox"/> 귀농인(명), <input type="checkbox"/> 여 성(명), <input type="checkbox"/> 기타(명) (※해당 시 ■)					
활동 내용	○ ○ ○ ○ ○ ○					
활동 운영비	강사비/의뢰비	재료비	식비	다과비	기타	계
	원	원	원	원	원	0원
활동 사진	※ 활동 증빙사진은 강사 포함 활동 참여자 전원이 나오는 사진 증빙					
	활동 설명			활동 설명		
	활동 설명			활동 설명		

<작성요령 >

* 활동일지는 활동일마다 작성하며, 보조사업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1일 1장 이상 가능)

□ ○○○ 프로그램 참석자 명단

○ 활동 조직명 : ○○농장(2024년 00월 00일, 00회차)

번호	성명	소속	비고
1	○○○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출석부 대리 작성 확인

202X.○월~○월 까지 ○○기관 소속 참여자가 ○○농장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참여자들의 자필 서명이 어려운 관계로 출석부를 대리 작성하였습니다.

성명	소속(기관명)	직위	연락처	서명
○○○	○○특수학교		010-000-0000	